

##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5호

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「주택법」(법률 제18834호, 2022. 2. 3. 공포, 8. 4. 시행)이 개정되어 도입된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제도와 관련하여,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적용 시기(2022. 8. 4.)와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시기(2022. 12. 28.)에 차이가 있어, '22. 8. 4일 이후부터 '22. 12. 28일 전까지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제도 운영에 혼선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제도 적용 시기 일치(부칙(제2022-868호, 2022. 12. 28. 공포) 제3조를 삭제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0조의9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 호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 
일부개정고시안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6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| 개   정   안  |
|--|--|
| <p>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6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부칙</p> <p><u>제3조(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) 제3조, 제26조제1항, 제27조제1항, 제30조제1항 및 제2항,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u></p> | <p>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6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부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|